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76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등]

재판경과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10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31511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정해왕, 박인동

피고, 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정운섭, 김국열, 박세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1. 17. 선고 2013나31511 판결

판결선고 2014. 5. 29.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에서 그 기간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으나, 법원에 제출된 모든 소송자료 를 통하여 살펴보았을 때 그 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까지 법원이 직권으로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여 기간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50875 판결 참조).

피고가 상고이유서에서 주장하는 사정이나 상고심에서 제출하는 자료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전부터 상속권의 침해를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기록상 이를 의심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이 민법 제999조 제2항이 정한 3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속회복청구의 소 및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C 주식 51%의 실제 처분권을 가진 주주이자 이 사건 예금의 실제 출연자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제기한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원고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에 기한 사무처리라고 볼 수 없고, 그 소송비용을 원고 등 다른 상속인들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보존·관리에 필요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유물 보존행위의 비용부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4.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 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양창수 주 심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김창석